

교직원 정년퇴직 규정

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3.4.22.		16		
2	2023.2.27.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교직원 정년퇴직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교직원의 정년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년) 교직원의 정년은 각호의 1과 같다.

1. 전임교원 만 65세
2. 직원 4급 이상 만 61세<개정 2023.2.27.>
3. 직원 8급이상 5급이하 만 60세<개정 2023.2.27.>
4. 삭제
5. 행정사무직 만 60세<개정 2023.2.27.>
6. <삭제 2023.2.27.>
7. 조종실기교수 만 60세(원장은 만 64세)
8. 기타 퇴직사유는 필요에 따라 학교내규에 의한다.

제3조 (퇴직발령일) 전조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자는 정년 해당 학기말에 퇴직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조에 의한 정년에 해당 혹은 초과한 자에 대하여서는 본인에게 통고한 후 1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단, 기존 조교에서 실습사무직 직종(명칭)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이 개정 규정 시행 전, 제2조의 제 3호 및 제 5호는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한다.